



식품의약품안전처

수신 수신자 참조
(경유)

제목 「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」 일부개정령 공포 알림(대통령령 제36122호)

- 1. 「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」 일부개정령(대통령령 제36122호)이 2026.2.19.자로 붙임과 같이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

<개정 사항>

| 조항 | 내용 |
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제16조의2 | 위해예측 실시 및 위해예측을 위한 시책 추진 시 고려사항 |
| 제16조의3 및 별표 | 식품위해예측센터 지정과 지정 취소의 기준 |
| 제16조의4 | 식품위해예측센터에 대한 지도 및 감독 |

- 2. 동 개정법령은 2026.2.19.자 관보와 국가법령정보센터(<http://www.law.go.kr>)에도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붙임 「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」 일부개정령(대통령령 제36122호) 1부. 끝.

식품의약품안전처장



수신자 관계부처, 본부(57개 전부서),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(48개 전부서), 6개 지방청(54개 전부서), 지자체 및 관련 협회, 산하기관 등

주무관 손익재 연구관 홍정미 식품안전정책 전결 2026. 2. 19. 과장 최종동

협조자

시행 식품안전정책과-1916 (2026. 2. 19.) 접수

우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, 식품의약품안전처 / www.mfds.go.kr

전화번호 043-719-2014 팩스번호 043-719-2000 / sij0301@korea.kr / 대국민 공개